

의안번호	2217989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6. 10. 1.
추계번호	26A1850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위해 행정, 재정,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이용 제고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주민 상호간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조(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 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조합의 지원·육성 방안 4. 조합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5. 조합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6.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7. 그 밖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4	안 제12조(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합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유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수익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임대료의 감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조합에 임대하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량규정
5	안 제13조(금융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조합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안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안 제11조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4	안 제12조 (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5	안 제13조(금융의 지원)	
6	안 제16조(조세의 감면)	

2. 상세 사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¹⁾에 따라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 및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사업이 확대되거나 신설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대 또는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 지원 방식,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시장진입 등 판로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27년 예산(안) 818억 1,100만원)

1)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기획예산처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현황

세부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방법)	예산(백만원)
			2027년 예산안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1133-302)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협동조합의 운영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설립·운영 지원, 판로지원, 교육지원 등) 수행 (협동조합시스템 운영) 협동조합 신고·수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타사업비)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연구 등 추진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출연)	81,811

자료: 기획예산처

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별도의 연구용역 실시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²⁾

다.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

2)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 2022~2024년.

할 경우 업무 위탁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라. 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조합이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부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마. 금융의 지원(안 제13조)·조세의 감면(안 제16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조합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 규모, 대상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감면 대상·기간·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수입 감소액을 파악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